

각종 평생교육시설 조건표

형태별 구분	원격교육형태	사업장부설	시민사회단체 가부설	언론기관부설	지식·인력개발사업 관련
설치조건	개인, 법인, 학교	종업원 100명 이상 사업장 경영자	설치요건 참조	설치요건 참조	지식·인력개발 관련 사업경영자
	법인: 1. 총회 회의록,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상에 평생교육시설 운영을 목적에 명시한 후 제출 2. 이사회회의록 또는 총회회의록에 평생교육시설 신고(변경) 사항을 명시한 후 제출 개인: 주민등록표 초본, 이력서 제출				
신고대상 및 설치요건	신고 -학습비를 받고 (사용료, 수수료, 통신료:비신고대상) -10인이상, 교육과정 30시간 이상 -화상강의·인터넷강의등 (컴퓨터, 통신, 위성통신, CATV활용) -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상 "원격학원"은 제외 -서버임대계약서 사본 -컨텐츠계약서 사본	신고 -설치자자격 ·산업체, 문화센터등 종사자 100명 이상 사업장	신고 -차세대원대상은 비신고 대상 -설치자 자격 ①법인인 시민사회단체 ②법령에 의거 주무관청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 ③회원수 300인 이상 시민사회단체 (NGO:공익목적) ④전문인력 5명이상 확보 ※지부인 경우 위 조건 별도 충족	신고 -설치자 자격 ①「신문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제9조제1항 규정에 따라 등록된 일간신문·주간신문·인터넷신문·주간신문 ②「잡지등정기간행물의 진흥에관한법률」제15조제1항에따라 등록된 월간잡지 발행자 ③「방송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을 하는 법인(지상파, 유선, 위성) ④「뉴스·통신진흥에관한 법률」제8조에 따라 등록된 뉴스·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⑤전문인력 5명이상 확보	신고 -설치자 자격 ①지식·인력개발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法人 ②지식정보의 제공사업, 교육훈련 및 연구용역사업, 교육위탁사업, 교육훈련기관의 경영진단 및 평가사업, 교육자료 및 상담사업, 교수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사업 등을 1년이상 경영한 실적 ③자본금자산 3억 이상 ④전문인력 5명이상 확보
	※ 2014. 7. 1. 개정법 시행 이전 신고된 시설은 설치자 지위 승계 시 반드시 전문 인력 5명 확보할 것				
교육대상	불특정다수(성인)	당해 사업장 고객	불특정다수(성인)	불특정다수(성인)	불특정다수(성인)
교육과정	1. 보건·의료·종교 관련 교습과정 제외 2. 평생교육법 제3조와 관련하여 유아법, 초·중등교육법 및 학원법(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제1호에 해당하는 교습과정-학교교과교습과정) 등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				
학 습 비 및 환불규정	설치·운영자가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여 정하되, 평생교육법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함(학습비 이외 추가 징수 불허) 학습비 반환기준에 의함(☞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3)				
시설·설비	1. 동영상강의: 서버 등 2. 전화: 전화라인 3. 기타: 해당 설비	- 급수, 냉·난방, 채광, 조명, 환기, 방음, 소방(소방은 소방법 준용)			
건물용도	제1종제2종근린생활시설(학원), 판매시설, 교육연구시설(☞ 건축법 시행령 제3조5 「용도별 건축물 종류」) *원격교육형태는 업무시설도 가능				
평생교육사	평생교육사 1명 이상				
보험가입	배상책임보험가입(1인당 1억원, 1사교당 10억원이상), 「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조례」 제6조제1항				
비 고	정보통신매체이용단, 국가간 원격교육은 자유 무역협정 체결인 경우만 허용	사업장 시설이용 종사자 확인: 직원명부 또는 4대보험관련서류	신고요건 ①~③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시민단체 ④충족	신고요건 ①~④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⑤충족	신고요건 ①~④ 모두 충족